#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09

발의연월일: 2020. 11. 17.

발 의 자:김형동·김은혜·송언석

추경호・김 웅・서일준

한무경 • 안병길 • 정진석

박대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도(道)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가 50만 명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도시의 특성 또는 소재하는 지방에서의 역할 등에 따라 도(道)의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 을 필요성이 있는 도시가 있음.

특히, 도청소재지인 도시는 해당 도(道)의 공공기관 및 부속건물의입주와 연계교통망 설계, 배후도시의 구상 및 구도심의 정비 과제 등에 따라 보건의료, 도시계획, 건설, 환경보전, 지적, 자동차운송사업 등에 있어 상당한 행정적 자율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 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2항 및 제3항).

####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의 제목 중 "대도시에"를 "대도시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소재하는 도시는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례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5조( <u>대도시에</u> 대한 특례인정)	제175조( <u>대도시 등에</u> 대한 특례
(생 략)	인정)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소재하는 도시는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례를 둘
	<u>수 있다.</u>
<u>&lt;신 설&gt;</u>	③ 제2항의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